

제2778호
2020. 10. 1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 | |
|---|------|
| 선 | 기관의장 |
| 람 |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75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0-746호 :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폐차 공매 공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753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020.4.8.) 취지에 맞게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사용 용도에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세부항목 정비(안 제6조제1호)
- 나.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 나. 연 락 처 : 전화 02-3396-4483, 팩스 02-3396-9085

다. 전자우편 : hjy22@junggu.seoul.kr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및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p> <p>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p> <p>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p> <p>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p> <p>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p> <p>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단, 유지관리 제외)</p> <p>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p> <p>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p> <p>자.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철거</p> <p>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p> | <p>제6조(기금의 용도) ----- -----.</p> <p>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p> <p>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p> <p>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p> <p>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p> <p>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p> <p>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p> <p>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p> <p>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p> <p>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p> <p>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p> <p>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p> |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한함)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시설용 자재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연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유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

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및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설 안전진단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
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고 제2020-746호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및 폐차 공매 공고

우리구 불법 및 부정주차 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중구견인차량 보관소에 1개월 이상 보관중인 별첨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다 음 -----

1.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0년 10월 16일 09:00 ~ 2020년 10월 30일 18:00

※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20년 10월 30일 18:00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20년 11월 02일 14:00 (오토마트 홈페이지 결과조회)

라) 낙찰자 대금납부 : 2020년 11월 02일 14:00부터 2020년 11월 09일 14:00까지

2. 매각대상 차량 : 3대(차량조회 목록참조)

3. 차량인도 절차

매각 결정된 자동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에 舊자동차 번호판을 반환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셔야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번호판은 별도 수령없이 등록가능함)

4. 공매입찰 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주) 오토마트(www.automart.co.kr)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주)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임)

나) 마감기간 내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10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하고(기한 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 제외됨), 입금자 명목과 입찰등록자명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다)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2-864648 예금주: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계약(낙찰잔금입금)계좌 : 상동

라) 유찰된 공매보증금은 이자가산 없이 낙찰자 발표 후 7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계좌번호로 환불처리 합니다.

※ 반환 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입금자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계약보증금은 공매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바) 국제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나) 국제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다)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입찰자는 입찰권한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함(단독입찰불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 규정 적용)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 후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로 충당됩니다.

8. 차량인수 및 하자책임

가) 낙찰자는 잔금완납 후, 14일 이내에 명의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차량 미인수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매보증금외 납부잔금은 반환)

나)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를 인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합니다.

다) 낙찰된 차량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라) 낙찰된 차량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무상의 하자나 물건의 성능 규제, 규격, 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 등의 열람, 현물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중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체육공원공영주차장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월~금) 공휴일 제외

9. 공매중지

※ 낙찰자가 명의이전 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주에게 인도함.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나)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각차량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 하셔야 합니다.

라)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마) 명의 이전 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단이 임의처분 합니다.

바) 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은 행정상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낙찰자가 이전 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차등록증(명의 이전 완료분)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자동차를 인수할수 있음.

사)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견인차량보관소(☎ 02-2280-83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 상 차 량

| 연 번 | 차량번호 | 차명 | 차종 | 보관일시 | 소유자명 | 소유자주소 |
|-----|---------|-----|------|---------------------|---------------------|------------------|
| 1 | 40두5582 | 액티언 | 승용중형 | 2019-04-15 18:22 | 김*영 |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 |
| 2 | 35마8190 | 레조 | 승용경형 | 2019-07-14 0:37 | LUTAA*****BAYA R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 3 | 56라2804 | 레이 | 승용경형 | 2019-04-11 12:41 | YUNUSS*****TAM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